협회등록 대표주관회사 계약서

발 행 회 사 : ㈜아이피에스

대표주관회사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주식회사아이피에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의 협회등록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내용) "갑"은 "을"을 "갑"의 협회등록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하며, "을"에게 "갑"의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한다. "을"은 "갑"의 협회등록 대표주관회사로서 "갑"의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을 인수하며, "갑"의 협회등록을 추진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조 (경영관리실태, 재무 및 회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을"은 본 계약후 "갑"의 협회등록 추진을 위해 "갑"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자료확인(이하 경영관리실태) 및 현지조사를 포함하여, 발행회사의 재무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한 등록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료의 제출) "을"은 제 2 조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조직도,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 2. 회계규정에 관련된 자료
- 3. 기별 자금조달 및 사용실적 현황 자료
- 4. 기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 5.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료
- 6. 기타 경영관리실태, 재무 및 회계관리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현지조사) "을"은 제 2 조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의 사무소 및 공장에 임하여 관련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협회등록요건 관련 권고) "을"은 제 2 조에 의한 경영관리 실태 등의 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관계회사와의거래 및 경영관리체제의 정비 등 협회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1. 신규사업의 진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계획을 결정한 경우
- 2.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거나 그 러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 3. 협회등록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경영계획을 결정한 경우
- 4. 기타 협회등록기업으로서의 경영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조 (계약해지) ① 제 3 조 내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구 또는 권고 등에 "갑"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회등록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갑"의 협회등록을 추진하지 않거나 "을"이 주식인수업무의 제한 조치 등 협회등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계약기간 중 "갑"에게 제공한 협회등록추진관련 자문에 대한 대가를 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 (정보이용제한) ① "을"은 "갑"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점검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등을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갑"의 협회등록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을"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갑"의 협회등록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 "갑"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은 관계법령등의 개정이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갑"과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9 조 (이의 처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 또는 "갑"과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 (불성실 자료의 귀책) ① 제 4 조에 의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 열람시 "갑"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갑"이 진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갑"이 진다.
- ③"갑"이 허위사실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합리적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없는 과거 및 예측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을"이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 제



37 조에 의한 부실분석등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11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계약 기간 및 수수료) ①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협회등록을 위한 유가증 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갑"이 "을"에게 지급할 자문 및 인수에 관한 수수료는 공모금액의 3.0%로 한다.
- ③"갑"은 "을"에게 제 12 조 제 2 항에 의한 자문 및 인수에 관한 수수료 전액을 공모대금 납입일 익일에 지급한다.
- ④"갑"의 협회등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제 12 조 제 2 항에 의한 수수료 제외) 중 신문공고비(수요예측, 청약, 배정 안내)와 사업설명서 인쇄비(배송비 포함)는 "을"이 부담하고, 기타의 부대비용 일체는 "갑"이 부담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3 년 // 월 // 일

갑: 중심회사아이피에스

(株)이이피에스代表理事張鎬承

을 :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東洋綜合金融證券株式

代表圖事 朴 重